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2023. 1. 19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이상정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8일

-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법 인용조항 및 일부 용어 ·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 학대와 피해 장애인에 대해 정의함. (안 제2조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도지사의 예방 및 신고 관련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. (안 제4조의2)
- 시행계획에 '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- 장애인인권교육 내용에 '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'을 포함하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·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에서는 목적규정에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, 같은 조 하단의 문구 중 '차별과 인권 침해'를 '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'로 정비하였음.
 - 먼저 법률 인용 조문의 삭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,
 - 법제처는 '자치조례'의 경우, '위임조례'와 구분될 수 있도록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법률 인용 문구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 - 본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가 아닌 도 자치

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바, 인용 문구의 삭제는 문제가 없음.

- 다음으로, 일부 문구 정비와 관련해서는,
 -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 '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'로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침해하는 행위, 즉 인권 침해의 범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문구를 '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'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상 정확한 표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2조에서는 일부 문구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'장애인 학대'와 '피해 장애인'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음.
 -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(법제처)에 따라 '초래하는'을 '주는'으로, '통상적으로'를 '일반적으로'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,
 - '장애인 학대'에 대한 정의는 「장애인 복지법」제2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, '피해 장애인'또한 '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'로 정의하여 의미상 문제가 없음.
- 안 제4조의2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4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'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 방안'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, 안 제9조제3항에서는 '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'을 도 소속 공무원,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

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(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, 제59조의10(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, 그리고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괴롭힘 등의 금지) 등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대상 학대·범죄,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절차, 예방 및 방지 등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과 적절한 시책 강구 의무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- 안 제12조제1항은 인용 법조항인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'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제2항'으로 변경한 것임.
 - 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제23조(시행규칙)를 삭제함. 본 조항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 규정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·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·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.
 - 따라서 본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¹⁾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, 본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없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일부 용어·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**”를 “**충청북도에**”로, “**차별과 인권 침해를**”을 “**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**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초래하는**”을 “**주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**통상적으로**”를 “**일반적으로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**장애경력**”을 “**장애 경력**”으로, “**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**”을 “**차별을 해서는 안된다**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**인정하는 장애인의**”를 “**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**”로, “**보장하는**”을 “**보장받도록 하는**”으로 한다.

5. “**장애인 학대**”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**피해 장애인**”이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(이하 “**장애인 인권침해**”라 한다)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(이하 ”**장애인 등**“이라 한다)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

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”를 “인권침해도”로, “인권 침해와 차별의”를 “인권침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((이하)”를 “(이하”로 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)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상시”를 “항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“차별 및 인권침해”를 “인권침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· 지원 방안

제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차별과 인권침해”를 각각 “인권침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4. 피해 장애인 보호 · 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를 “(위원의 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의 위촉을 해제”를 “위원을 해촉”으로 한다. 제2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,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에-----</u> ----- ----- ----- <u>차별과 학대 등</u> <u>인권침해를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장애”란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<u>초래하는</u> 상태를 말한다. 2. (생 략) 3. “장애인 관련자”란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·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돋기 위한 자임이 <u>통상적으로</u>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.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주는</u>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반적으로-----</u> --.

4. “장애인 차별금지”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.

<신 설>

5. “장애인 인권보장”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, 유엔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
6. (생 략)

4. -----
----- 장애 경력

-----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-----.

5. “장애인 학대”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6. “피해 장애인”이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.

7. -----

-----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-----
----- 보장받도록 하는 -----.

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<u>②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(이하 “장애인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(이하 “장애인 인권침해”라 한다)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(이하 “장애인 등”이라 한다)의 권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장애인의 권리 등) ①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, 인권침해와 차별의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④ 장애인을 비롯한 충청북도민(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와 시·군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4조(장애인의 권리 등) ① ----- ----- 인권침해도 ----- ----- 인권침해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(이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조의2(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)</u></p> <p>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흠페 이지에 <u>상시</u>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 <u>항상</u>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

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장애인 <u>차별</u> 및 인권침해 실태 와 대응 방안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· 5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인권침해 ----- -----</p> <p>4.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 인 보호 · 지원 방안</p> <p>5. ·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교육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장애인 <u>차별과 인권침해 행위</u> 의 개념과 사례</p> <p>3. 장애인 <u>차별과 인권침해</u>에 대 한 신고, 조정, 권리구제 등에 관 한 절차 및 조치계획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9조(교육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인권침해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인권침해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<u>피해 장애인 보호 · 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</u></p> <p>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)</p> <p>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

<p>제12조(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)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12조(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제2항----- ----- 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7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위원을 해촉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3조(시행규칙) <삭 제>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)
2.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
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의 의료기사
5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응급구조사
6. 「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9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
1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11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12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3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1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7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9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20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2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
2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③ 삭제 <2017. 12. 19.>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·방법 등의 안내, 제5항에 따른 조치,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·시간·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
 2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
 3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 4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 5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
 6.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
 7.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
-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둔다.

1.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 2.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,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 3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 4.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· 운영
 5. 관계 기관 · 법인 · 단체 · 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
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
-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 · 운영, 상담원의 자격 · 배치기준,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,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 ①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자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자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(이하 “피해장애인아동”이라 한다)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인아동 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